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안	94
번호	

제출년월일 : 1999. 12.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하수도사용료 업종 및 체계를 세로이 반영된 환경부훈령 제380호('97. 12. 30)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맞게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함
(안 제8조)
- 나. 하수관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청소 및 준설의 시기를 정함(안 제9조)
- 다. 하수도사용료 업종구분을 상수도사용료 업종구분 체계와 같게하여 요금
을 인상·조정하고, 수질하수도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11조, 안 별표1,2,3)
- 라. 접용료부과기준,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납기 및 징수방법을
정함(안 제15조 내지 안 제17조, 안 별표4, 5)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련자료 : 덧붙임

- 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훈령 제380호) 1부
- 나. 관련법령(발췌) 1부
- 다. 입법예고 결과 1부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접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진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 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체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 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영주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

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하수관거의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단일시설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④ 수질환경보존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은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하수 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

에도 또한 같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 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 ⑤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5조(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5]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태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태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 처리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다만, 배수 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④ 해당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고시하는 접촉산화방식단가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단기가 고시되기 이전에는 전년도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납기와 납부방법) 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6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승인·허가·신고시 부담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 90일이내)

2.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경우 : 허가·협의시 부담금 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일 30일 전)
3. 제1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경우 : 3회 균분 납부하여야 하며, 1회 납부는 사업승인 후 3월 이내, 2회 납부는 그 사업의 중간일, 3회 납부는 사업 준공 3월 전까지 납부
4.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 손괴 행위 발생 시 부담금 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 30일 이내)
5. 제16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 사업 승인 후 6월 이내. 다만, 부담금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3회 균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기는 제3호와 같음.

제18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징수
10.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5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1조 제2항의 개정요율은 공포후 최초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하고,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m ³ /월)	m ³ 당 단가(원)		
가정용	1 ~ 10	60		
	11 ~ 20	75		
	21 ~ 30	90		
	31 ~ 40	110		
	41 ~ 50	140		
	51이상	185		
업무용	1 ~ 20	80		
	21 ~ 50	110		
	51 ~ 100	140		
	101 ~ 300	170		
	301이상	200		
영업용	1 ~ 30	100		
	31 ~ 50	150		
	51 ~ 100	220		
	101이상	330		
숙 탕	1종	1 ~ 200	100	
		201 ~ 300	130	
		301 ~ 500	165	
		501이상	200	
용	2종	1 ~ 200	210	
		201 ~ 500	290	
		501 ~ 1000	440	
		1000이상	660	
산업용		1 ~ 200	90	
		201이상	120	

【별표2】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업 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부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제41회 - 산업건설 제14차 부록)

업종	구 분 내 용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점·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시장(상가포함) · 차량판매·정비업(감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용원 포함)
병·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제, 식목업
도·공·제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살장, 정육업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폐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 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 임·색업 및 삼유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과학제조가공업, 기타 원평균 200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을 멀출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업 종		구 분 내 용
욕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탕에 대한 금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탕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복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금수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제배업소

-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3】

수질하수도사용료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 BOD 또는 COD 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로 의거 산정한다.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 = 오염부하량 [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출량(m³)] × 1/1000
× kg단가 × 1일 조업시간 × 30일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별표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백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8

【별표5】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text{•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text{•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관거 총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alpha =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료후 평균 도매물가상승율 } \eta}{100})$$

η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낸수

신 구 조 문 대 비 표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u>점용료</u> 또는 사용료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배수설비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가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출 또는 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p>제1조(목적) -----</p> <p>-----</p> <p>----- 관 -----</p> <p>-----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p> <p>-----</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도에 ----- --배출하는 자----- 배제 ----- ----- 소유자 · 관리자 ----- -----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 ----- 배수설비설치자 ----- ----- 사용개시 -----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 ----- 소유자 ----- 니 등 시설 ----- -----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 ----- ----- 차집관거 -----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현 행	개 정(안)										
<u>제 2 장 배수설비의 설치, 관리</u>	〈삭 제〉										
<p>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 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디 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 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p>	〈삭 제〉										
<p>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1. 오수만을 배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표에 따른다. 다만, 단일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일부를 배출하여야 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 다.</p>	〈삭 제〉										
<table border="1"> <tr> <td>배수인구(명)</td> <td>150이하</td> <td>300이하</td> <td>600이하</td> <td>601이상</td> </tr> <tr> <td>내경 또는 내폭(m:m)</td> <td>100이상</td> <td>150이상</td> <td>200이상</td> <td>250이상</td> </tr> </table>	배수인구(명)	150이하	300이하	600이하	601이상	내경 또는 내폭(m:m)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50이상	
배수인구(명)	150이하	300이하	600이하	601이상							
내경 또는 내폭(m:m)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50이상							

현 행	개 정(안)										
2. 우수만을 배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와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우수만을 배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인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배수면적 (제곱미터)</th> <th>200 미만</th> <th>600 미만</th> <th>1,200 미만</th> <th>1,20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내경 또는 내폭(m:m) 이상</td> <td>100 이상</td> <td>150 이상</td> <td>200 이상</td> <td>좌기의 유통 내경 또는 내폭이나 개수 를 증가시킨다</td> </tr> </tbody> </table>	배수면적 (제곱미터)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이상	내경 또는 내폭(m:m) 이상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좌기의 유통 내경 또는 내폭이나 개수 를 증가시킨다	
배수면적 (제곱미터)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이상							
내경 또는 내폭(m:m) 이상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좌기의 유통 내경 또는 내폭이나 개수 를 증가시킨다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 ·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총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이 120mm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형물질을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방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시장은 영주시하수도사업소 행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가벼운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현 행	개 정(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기시 공고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 공사의 비용은 그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삭 제>
제7조(공사비 산출방법)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의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8조(공사비의 선납 등)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은 선계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의 계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② 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안)
<p>③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소한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재비용은 그려하지 아니하다.</p>	
<p>제9조(시공업자) ① 공사의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민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가벼운 공사는 그려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만은지가 사공하이아---임순 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 경비한 -----</p> <p>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맡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제41회 - 산업건설 제14차 부록)

행	개정(안)
<p><u>제10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칠가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u></p> <p><u><신설></u></p> <p><u>②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제3조 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u></p> <p><u>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을 그 배수시설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u></p> <p><u>⑤ 제4항의 공사비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u></p>	<p><u>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u></p> <p><u>-----</u></p> <p><u>-----</u></p> <p><u>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u></p> <p><u>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u></p> <p><u>3. 배수설비설치자로 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정료, 인건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충비용으로 한다.</u></p> <p><u>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⑤ 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u></p>
<p><u>제11조(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u></p>	<p><u><삭제></u></p>

현 행	개 정(안)
<p>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배수설비는 그 배수 설비가 설치될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된 배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반으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p> <p>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u>제 3 장 공공하수도의 사용</u></p> <p>제1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p>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청 및 영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 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p> <p>-----</p> <p>1. 배수설비-----</p> <p>-----</p> <p>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p> <p>-----</p> <p>3. ----- 하수-----</p> <p>4. ----- 하수-----</p> <p>-----</p> <p>② -----</p> <p>-- < 삭제> -----</p> <p>----- < 삭제> -----</p> <p>----- < 삭제> -----</p> <p>-----</p>

현 행	개 정(안)
제14조(일시 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제8조(일시 사용신고) 기타의 ----- ----- 조례시행규칙 -----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담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하수관거의 충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충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충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충설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다른시설 ----- 조례시행규칙이 ----- ----- 따라 시장의 ----- ② 그 다른 ----- ----- ----- ----- -----
제 1 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삭 제〉
제16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오수로 인정할 수 있는 우수 또는 저하수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단일 시설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재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p> <p>③ 시장은 1일 최대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 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pp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요금외에 【별표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입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p> <p>-----</p> <p>-----</p> <p>-----</p> <p>① 수질환경보존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은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17조(오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시설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한다.</p> <p>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2조(한수배출량의 인정) ① -----</p> <p>----- 수도사용자(전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도 -----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p> <p>② -----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p> <p>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기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p> <p>2. 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p> <p>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험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p> <p>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p>

(제41회 - 산업건설 제14차 부록)

현 행	개 정(안)
<p>제18조(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u>다량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u>오수배수량</u>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13조(하수 배출량의 조사) ① --- 제12조---</p> <p>-- 하수-----</p> <p>판단되거나 -----</p> <p>-----</p> <p>하수-----</p> <p>----- 1일 100톤이 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부 분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납입은 시장이 한다.</p> <p>② -----</p> <p>----- 관리자로서 주 의를 다하여 -----</p> <p>③ 사용자기 -----</p> <p>-----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 며, 검사유호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사에도 또한 같다.</p> <p>④ ----- 하수-----</p> <p>신고한 하수-----</p> <p>----- 하수배출량-----</p> <p>---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축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p> <p>---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설치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 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p> <p>----- 수도급수사용료와 -----</p> <p>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p> <p>-----</p> <p>② -----</p> <p>----- 방법을 따로 정하여 -----</p>

현 행	개 정(안)
<p>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그 징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p>	<p>③ 제8조----- ---- 경우의 ----- 신고시에 ----- ----- 환불 ----- ----- 신고 ----- 초과한 2개월분 ----- ----- ④ ----- --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축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p>
<p>제20조(점용료)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 부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p> <p>②~⑤ <생략></p>	<p>제15조(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21조(원인자 부담금)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1/2이상 2.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 <p>② 제1항의 비용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6조(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지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신시설계비, 한정평가비, 용지비(지장률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장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지설치비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5】와 같이 산정한다.</p>

현 행	개 정(안)
	<p>1. 시장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위·하가사합의, 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기, 하수종말처리시설, 평포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배수설비 설치비에게 부담시켜야 함.</p> <p>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p> <p>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p> <p>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p>
	<p>2. 시장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함.</p> <p>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p> <p>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p> <p>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p>

현 행	개 정(안)
	<p>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 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p> <p>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 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 성, 공장부지조성 등)</p> <p>3) 공항의 건설사업</p> <p>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 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p> <p>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 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 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 요한 경우</p> <p>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소관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 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 에게 부담시켜야 함.</p> <p>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 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p> <p>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 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하는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학류식 하수 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 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p>

현 행	개 정(안)
〈신 설〉	<p>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키야 함.</p> <p>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p> <p>나)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p> <p>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담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심사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별표3】 및 제18조【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p> <p>④ 해당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고시하는 접촉산화방식 단가로 한다. 다만, 담해인도 단가가 고시되기 이전에는 전년도 고시 단가를 적용한다.</p> <p>제17조(원인자부담금 납기와 납부방법) 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담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승인·허가·신고서 부담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밑부 (납기 90일 이내)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 허가·협의서 부담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밑부(납기 30일 전)

현 행	개 정(안)
	<p>3. 제1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경우 : 3회 균분 납부하되, 1회 납부는 사업승인후 3월이내, 2회 납부는 그 사업의 중간일, 3회 납부는 사업 준공 3월전까지 납부</p> <p>4.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 순회 행위 발생시 부담금 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 30일 이내)</p> <p>5.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 사업승인후 6월 이내, 다만,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 3회 균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기는 제3호와 같음.</p>
제22조(연체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접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해 사용료, 접용료, 기타 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징수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가산금) 시장은----- 접용료,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 체납된 금액의----- ----- 징수한다.
제23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접용료·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감면)----- 필요한 ----- ----- 조례시행규칙이 ----- ----- -----
제24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사용료·접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사용료·접용료·원인자부담금----- ----- 납부터 ----- -----

현 행	기 정(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결정 을 하고 -----
제25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또는 전용료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전용료·원인자부담료 -----
제26조(자료제출 명령 등) 시장을 사용료 또는 전용료 및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전용자에게 자료의 재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전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 5 장 보 쳐	〈삭 제〉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무의 승계)-----배지----- ----- 관리권----- 보 제34조의---- 의거 ----- ----- 의무----- ----- 사용료의 경우에는 ----- ----- 아니하다.
제28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의 제한) ① ----- ----- -----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함----- ② -----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 -----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2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윤·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다음의----- - 수도사업소장 또는 윤·면·동장-----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삭 제> <삭 제>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의 접수 및 공사비의 정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정수 및 정산	<삭 제>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2. 제3조 -----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3. 제7조 -----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허가	4. 제8조 ----- 신고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제10조 -----
9.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정수	6. 제11조 및 제14조 ----- ----
<신설>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등의 조사	8. 제13조 ----- 하수배출량의 ---
1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접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의 징수	9. 제15조 ----- <삭 제> ---
1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0. 제16조 -----
1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의 징수	11. 제18조 ----- 가산금-----
<신설>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0조 ----- ---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15. Ⅳ. 제12조의 ----- <삭 제>
16.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0조(과태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 설치 신청도 아니한 자	

현 행	기 정(안)
2. 제4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절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벌위내에서 과태료에 처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30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조례시행규칙 ---

현 행				개 정				
【별표1】 하수도사용료요금표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				
구분 업종	기본 요금		총과사용요율	구분 업종	사용 요율			
	기본 요수량 (m ³ /월)	기본요 금(원)	구간 (m ³ /월)		사용구분(m ³ /월)	미당 단가(원)		
일반용	10이하	300	10초과~ 30이하	가정용	1 ~ 10	60		
			30초과~ 50이하		11 ~ 20	75		
			50초과~ 100이하		21 ~ 30	90		
			100초과		31 ~ 40	110		
					41 ~ 50	140		
					51이상	185		
산업용	<u>1m³ 당 70원</u>			업무용	1 ~ 20	80		
					21 ~ 50	110		
					51 ~ 100	140		
					101 ~ 300	170		
					301이상	200		
공공용	<u>1m³ 당 60원</u>			영업용	1 ~ 30	100		
					31 ~ 50	150		
					51 ~ 100	220		
					101이상	330		
공중용	<u>1m³ 당 30원</u>			욕탕	1 ~ 200	100		
					201 ~ 300	130		
					301 ~ 500	165		
					501이상	200		
일시 사용	<u>1m³ 당 180원</u>			욕탕	1 ~ 200	210		
					201 ~ 500	290		
				산업용	501 ~ 1,000	410		
					1,001이상	660		
				<u>산업용</u>		1 ~ 200		
						90		
						201이상		
						120		

(제41회 - 산업건설 제14차 부록)

현 행		개 정	
【별표2】 하수도사용위종구분표		【별표2】 하수도사용위종별구분표	
(1) 하수도 사업업종			
업 종	구 분	업 종	구 분 내 용
일 반 유통	<p>대상업종 : 영주시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업종 구분의 가정용 및 욕탕용 2종과 영업용 1종, 2종 중 산업용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p> <p>사 용 수 : 상기 업종의 사용 상수도수, 지 하수 및 기타수(온천수 및 하천 유수인용 포함)</p>	가 경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 또는 공동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 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연탄·양곡·문방구·치물·침물의 소 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기 경영하는 점 술집 및 지압업소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 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산 업 유통	<p>대상업종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 업체</p> <p>2. 두체 재배업소</p> <p>사 용 수 : 상기업종의 사용 상수도수, 공 업용수, 지하수 및 기타수</p>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 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포함) 학교 정당 농회, 축회, 수회, 산림조합, 화곡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립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공 공 유통	<p>대상업종 : 영주시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업종 구분의 욕탕용 1종 및 공공용 중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아동, 양로원, 경로당, 탁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 외한 공공용</p> <p>사 용 수 : 상기업종의 사용 상수도수, 지 하수 및 기타수</p>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회, 축회, 수회, 산림조합, 화곡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립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호 죽 유통	<p>대상업종 : 영주시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업종 구분의 가정용 및 공공 용 중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 로원, 경로당, 탁아소,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p> <p>사 용 수 : 상기업종의 사용 상수도수, 지 하수 및 기타수</p>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회, 축회, 수회, 산림조합, 화곡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립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현 행		개 정	
업 종	구 分	업 종	구 분 내 용
업 무 용		업 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제41회 - 산업건설 제14차 부록)

	현 행	개 정
(2) 하수도 사용업종 상세표		
일 반 용	<p>전용건에 의하여 가사용에 급수하는 곳, 부동산중개소, 대서소, 문방구, 반화가게, 연초소매소, 연탄소매업, 양곡소매업, 고물상, 목공소, 일반소매점포, 지물포, 철물점, 연쇄점, 직물상, 방아간, 기타 이와유 사한 업소, 칠공소, 세탁소, 염색업소, 의류판매업, 포복점, 양복·양장점, 양화점, 안경점, 시계점, 금·은방, 금속제품판매업, 전기제품판매업, 유리및도자기판매업, 식료품판매업, 청과류판매업, 건축자재업, 농기구판매업, 화원, 슈퍼마켓, 백화점, 가구점, 악기점, 서적상, 여인숙, 여관, 호텔, 휴게실, 다방, 제과점, 가축사육업, 가축병원, 약국, 병원, 의원, 화공약품판매업, 이·미용소, 간이음식점, 주류판매업, 대중음식점, 전문음식점, 유홍음식점, 당구장, 테니스장, 몰라스케이트장, 탁구장, 유기장, 불링장, 골프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도서관, 사설학원(독서실), 기원, 사진관, 체육관, 인쇄소, 창고업, 세차장, 주차장, 자동차정비위, 주유소, 운행, 보험회사, 사설금융조합, 전당포, 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복탕, 안마시술소, 러닝(영업용), 위 기타 유사한 업소, 기타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에 속하지 아니한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점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식장(상가포함) 차량판매, 정비업(인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예식장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다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웨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 하는 수영장업 제외)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발전소 이발소(미용원 포함) 병원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화훼, 식복업 민팅(다른 금수위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니 지하층을 포함한 1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도살장, 정육업 양조업, 개빵업, 채분업(발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기구류제조업(자재기공포함), 인료제조(고아기스제조포함)
산 업	합성섬유, 합성수지, 제조 또는 재생업, 페인트제조업, 폴리스틱제조업 또는 재생업, 염색표백업, 직물업, 재혁업, 기계기구제조업, 메이크업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재당업, 조미료제조업, 제사업, 금속제품제조업,	

현 행		개 경						
산 업 용	유관 및 도자기제품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제분업, 조선업, 제지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제빙냉동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종나물제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색업 및 실유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 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원평균 200세계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도급업(도급이 주업인 경우에 합함) 제재소, 복재소(목공소 제외) 						
공 공 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영, 국공립병원, 교회, 사찰, 방송국, 신문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기관, 원호단체, 정당, 농회, 축회, 수회, 산림조합,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대중목욕탕, 비영리 수영장	<p style="text-align: center;">영 인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업(시멘트 기공제품, 초자재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면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합함)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요율 적용)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공 죠 용	지방자치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아파트, 연립주택제외)에 급수하는 곳, 고아원, 양로원, 경로당, 탁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1 종</td> <td>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td> </tr> <tr> <td style="width: 10%;">2 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바닥면적 100세계곱미터 이상의 헛스크립과 일개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td> </tr> <tr> <td style="width: 10%;">3 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체 재비업소 </td> </tr> </table>	1 종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바닥면적 100세계곱미터 이상의 헛스크립과 일개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3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체 재비업소
1 종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바닥면적 100세계곱미터 이상의 헛스크립과 일개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3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체 재비업소 							

(제41회 - 산업건설 제14차 부록)

원 행	개 정
<신 설>	<p>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p> <p>2. 영업용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p> <p>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p>

현 행		기 정
【별표3】 수질 하수도사용료		
수 청	구 량	사용료(원/m ³)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개월 중 5일이 상 300PPM이 상인 오수	100PPM 초과 시마다 (...)원씩 가산징수
SS(부유물질)	1개월 중 5일이 상 300PPM이 상인 오수	100PPM 초과 시마다 (...)원씩 가산징수

【별표3】
수질 하수도사용료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
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
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 BOD 또는 COD 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나,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계
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수질 하수도사용료

- 수질 하수도사용료 = 오염부하량 [수질초과
농도(mg/l) × 시간당 폐수출량(m³)] × 1/1000
× kg단가 × 1일 조업시간 × 30일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현 행		기 정	
【별표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		【별표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	1. -----	○ -----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2. -----	○ -----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	○ -----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8	4. -----	○ -----

현 행	개 정
【별표5】 <신설>	<p>【별표5】</p> <p style="text-align: center;"><u>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u></p> <p><input type="checkbox"/>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³/일) × 충사업비 ×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p>* 충사업비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충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관거의 계획 하수량(m}^3\text{/일)}} \times \alpha$ <p>* 충사업비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p>$\alpha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료후 평균 도매물가상승율}}{100}$</p> <p>$\eta$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p>

환경부훈령 제380호('97.12.30)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허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허수도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매수설비"라 함은 허수를 홍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기, 기타의 매수시설(이하 "매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매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매수구역내에서 매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광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집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지를 말한다.
5. "차진권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수 일정량의 하수를 차진하여 하수종별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군수·구청장의 공시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지자체"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신 또는 척기공시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매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매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지재비, 시공비, 지정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련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선액을 신규 허수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규 허수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4조(매수설비의 시공) ① 매수설비의 시공은 진실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시임면허를 뱉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시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입지 중에서 공시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매수설비의 권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매수설비의 개축·수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기가 하여야 한다.

② 매수설비설치자는 매수설비의 권리소홀로 인하여 누수·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권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평의시장과 구청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권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시장·평의시장 : 하수종밀처리시설, 차집관기상의 중개펌프장, 차집관기의 설치·개축·수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기의 준설
2. 구청장 : 차집관기를 제외한 하수관기 및 중개펌프장·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지물의 설치·개축·회장·수신 및 유지관리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권리에 관한 비용부담) ① 특별시장·평의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밀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기의 중개펌프장, 차집관기의 설치·개축·수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기(함류식 관기 및 우수관기 : 안지를 900mm 또는 통수단면적 0.7m²이상), 오수관(안지를 500mm이상)의 설치·개축·수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기의 준설비
 4. 하수중개펌프장·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 및 화장사업비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서체사업 및 기타비용
- ② 구청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권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3항의 간선관기 이하 하수관기의 설치·개축·수신 및 유지관리비
 2. 하수중개펌프장·빗물펌프장의 수신 및 유지관리비
 3.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신 및 유지관리비
 4.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개축·수신 및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예산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허수의 배출량이 험지하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대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시(군) 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일시시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사용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하수관기 준설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관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험지이전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짐용기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재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발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원기 유지·관리비 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양에 적진 생활하는 순수한 냉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참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친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한자리 더률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 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위반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이급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개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개축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개축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개축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개축장치를 신망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개축장치를 해손 또는 방설하였을 경우 즉시 위성복구하여야 하며, 기사유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인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개축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개축기 짐침 및 김침에 망해가 되는 물건의 적자,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시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시용료는 수도급수사업료와 납기를 같아 하며, 수도급수사업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령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군·지자체 수도사업료·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핵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개축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점용료) ① 시장·군수·지자체청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기를 할 때에는 빙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일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며,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신납하게 한다.

④ 빙 표 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히수도(하수관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설사설개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률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기는 개별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 4조**의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히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하가시성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개화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히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히수도 개화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히수도(하수관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키야 함.

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3)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양

2. 공공히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히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구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태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1) 타공사에 의한 공공히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히수도 공시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신착공사로 인하여 공공히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2) 태행위에 의한 공공히수도 공사 : 공공히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나)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 마)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 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터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공공하수도편리청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해손하는 경우
4. 공공하수도편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시·군·구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민재한 배수설비의 개화하수량이 "제2항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기비용을 이를 추가로 신정·위선하여 부담시키야 함.
- 1)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위·치리하는 경우
- 2) 수세식민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유위·치리하는 경우
-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일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일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서 정한다.
- 제18조(기신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징용료·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정수 한다.
- 제19조(김민)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이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징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아래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광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수도시입소장, 유통 또는 민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청수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수매출명의 인정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수매출명의 조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청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청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선금의 청수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번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5. 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청수

제25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계조치) 공진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에
의기 98. 6. 30까지 개정하여야 한다.
- (3) (작용례) 이 기준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발처리시설의 설치가 원료
되고, 환경부정권이 지정·고시한 후 종합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
된다.

[별표 1]

하수도사용요율표

구 분 입 종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율	
		사 용 구 분 (m ² /월)	m ³ 당 단가 (원)
가정용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업무용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영업용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용량· 1 종		1~500 501~700 701~1,000 1,001이상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산업용		1 m ³ 당	

-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입종으로 구분하여, 주된 하수가 분리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각 8 히.

[별표 1-1]

미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인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금수전에 의하여 기사용으로 금수하는 것 · 담배·인연·양복·분방구·지불·현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 미터미만의 임소 · 신문보급소, 선체장에자가 경영하는 침술집 및 지원임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천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금수
입 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부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기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포함) · 학 교 · 정 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천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 병 영 ·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금수탑에 의한 금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금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고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금수 · 다른 금수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소

업 종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풀집객업, 공인장, 속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기포함) · 차량판매·정비업(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애식장 · 학원(도시설 포함, 페어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비디민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립과 인개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융 등 포함, 진당포 제외) · 벌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개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회계, 쇠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저히 층을 포함한 4층이상 전문), 오피스텔 · 도선장, 정유업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이 5평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의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진지제품제조업, 휴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개기공포함), 인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 임세업 및 섬유류제조 기공업, 석료품제조가공업, 피하제조 기공업, 기타 월평면 200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기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제소, 목제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지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복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개화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멀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영업용	

임 종	구 분 대 8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 · 밀도 규수진에 의한 신박용 규수
숙당·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 · 공동탕에 대한 규수(허가업소의 입대구분은 허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욕장입(허가업소의 입대구분은 허가기준) · 비단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인개하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규수 · 가족탕입, 한중탕입(허가업소의 입대구분은 허가기준)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암마시술소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체 제조업체

- 주 1. 상기임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임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임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임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수질 하수도사용료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 BOD 또는 COD 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치된 유량기 및 각종계량기에 의기 신정한다.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출량(m³)] × $\frac{1}{1000}$ × kg 단가 × 1일 조입시간 × 30일

※ 1일 조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별표 3]

하수도점용료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해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민족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민족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배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민족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민족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별표 4]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밀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기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밀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밀처리시설 총사업비 ×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종밀처리시설 평·량(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
양이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하수관기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기 총사업비 ×

$$\frac{\text{개발지역내 평생하수량(m}^3/\text{일})}{\text{하수관기의 계획하수량(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
양이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lpha :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 \text{년평균 } \text{토매물가상승율}}{100})$$

ii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

관련 법령 (발췌)

【하수도법】

제5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가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의 공고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년월일·배수구역(하수종말처리시설일 경우에는 이반에 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관거가 오수·우수가 같이 흐르는 합류식관거이고, 그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전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오수정화시설을 정화조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용료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양, 배수설비사용개시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하수의 수질과 양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 안에서 시설또는 건축물을 신축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8·3>
1. 제9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자에게 이의를 제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하수도법시 행령】

제16조(배수설비의 설치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포함하며,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건축허가 신청시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온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등) ① 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오염물질에 대한 방지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③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④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 폐수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축산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② 내지 ④ <삭 제>

제18조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 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로 한다.

입 법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205호('99년 11월 22일)에 게재
- 예고기간 : '99년 11월 22일 ~ '99년 12월 11일(20일간)
- 의견제출여부 : 없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94호
- 의 안 명 :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수도사업소

2. 개정이유

하수도사용료 업종 및 체계를 새로이 발령된 환경부훈령 제380호 ('97. 12. 30)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맞게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공공하수도를 임시사용 하고자할 때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함.(안 제8조)
- 나. 하수관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청소 및 준설의 시기를 정함.
(안 제9조)
- 다. 하수도사용료 업종구분을 상수도사용료 업종구분 체계와 같게하여 요금을 인상·조정하고, 수질하수도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11조,
안 【별표】 1, 2, 3)
- 라. 접용료 부과기준,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납기 및 징수방법을 정함.(안 제15조 내지 안 제17조, 안 【별표】 4, 5)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하수도사용료 업종 및 체계를 새로이 발령된 환경부훈령 제380호('97. 12. 30)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과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 개정내용 통보(경상북도 수질 67712-1432, '99. 7. 31)에 맞게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전문개정의 주요내용은

- 안 제8조는 공공하수도를 임시사용 하고자할 때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 안 제9조는 하수관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청소 및 준설의 시기를 정하고,
- 안 제11조 및 안 【별표】 1, 2, 3은 하수도사용료 업종구분을 상수도사용료 업종구분 체계와 같게 하여 요금을 인상·조정하고, 수질 하수도 산정기준을 정하고,
- 안 제15조 내지 안 제17조 및 【별표】 4, 5는 점용료 부과기준,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납기 및 징수방법을 정함.

환경부훈령 제380호('97. 12. 30)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과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내용 통보(경상북도 수질 67712-1432, '99. 7. 31)와 상이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 안 제11조제3항은 단일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 영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고 함)와 비교하여 검토하면,
 - 급수조례 제29조제2항과 업종구분에서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 동 조항은 급수조례 제29조제2항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하수도사업 합리화를 위한 조항으로는

- 안 제11조, 안 【별표】 1, 2, 3은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54.3% 인상, 요금구분을 5종에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와 같이 6종으로 개편,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간체계를 2~6단계로 세분화, 수질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 안 제16조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안 제17조는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나,
- 영주시 재정과 주민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종합적 검토의견은

급수조례와의 균형을 위해 안 제11조제3항 단서, 영주시 재정과 주민 부담 고려를 위해 안 제11조 및 안 【별표】 1, 2, 3, 안 제16조, 안 제17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999. 12.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현